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072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 나.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대상과 주기, 기술지도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다.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및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라.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절차, 시범사업 지정 기준, 기술개발 성과 상용화 지원 시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10조까지)
- 마.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제11조)

바.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2조)

사.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1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7. 23. ~ 9. 1.)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둘 수 있다. 민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 조사의 대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1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5조(기술지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개발의 방향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규제·정책, 시장, 산업 등의 분석
3. 기후변화대응 연구 역량 및 기술개발 연구 성과
4.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전망
5.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기대 효과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지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한 연구기관 등이 기술지도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송부할 수 있다.

제6조(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인력·시설 등의 기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보유한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독립적인 연구 공간에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한 연구기자재가 위치한 연구시설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제8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규모, 위탁 기간, 위탁 내용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에게 출연 또는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기관과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와 그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시범사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일 것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 반영도가 높을 것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자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시책)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사업 등 지원
2. 기후변화대응기술 정보공유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장비·시설 및 부지의 사용지원
4. 연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소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 성과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을 세우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 기술·정책·국제협력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기술분야 해외우수연구인력의 유치·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대응 기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받은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1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한 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및 위탁기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사업 또는 그 일부를 관련 대학 등에 위탁한 경우 위탁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상세내용, 수탁기관 및 위탁기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연 락 처	044-202-4512